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41731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정재하, 강태경

피고1. 주식회사 B

2. C

3. 주식회사 D

4.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울 담당변호사 박근영

변론 종결2019. 6. 20.

판결 선고2019. 7.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원고에게 139,41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8. 9. 15.까지 연 6%, 2018. 9. 1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원고에게 139,41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D, E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각 47,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8. 9. 15.이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법령의 적용

- 1) 피고 B, C: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2)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부칙 제2조는 위 대통령령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부터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바,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와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을 하고 피고 B의 보증신청에 따라 원주 F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원주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보증금액 198,020,000원의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다. G은 피고 B와 원주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설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가 2015. 2. 4. 부도처리되고 보증채권자인 G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므로 원고는 2017. 6. 19. G에 1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가지고 있던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그 취득금에 해당하는 50,582,820원을 변제충당하였다.

피고 E는 G과 피고 B 사이의 원주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설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G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연대보증인이 된 피고 D 및 H 주식회사 그리고 피고 E와 공동보증인 지위를 가지게 되는바 원고의 출재로 피고 E가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E는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 즉 139,417,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자신의 부담비율인 47,500,000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

설령 위 하도급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E의 인영이 피고 C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① 피고 E가 피고 C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맡기는 등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 위임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E는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② 피고 C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E가 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을 부여하거나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G로서는 피고 C이 정당한 대리권을 보유하였다고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E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쟁점

1)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 E는 하도급계약서 날인된 자신의 인영은 피고 C에 의하여 권원 없이 날인된 것으로 자신은 피고 B의 G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이 하도급계약서에 자신의 인영을 날인하기 전에 피고 C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G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전에도 포괄적으로 자신의 인영을 사용하여 그러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적도 없으며, 피고 C에게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거나 G에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의 인용 여부에 있어서 쟁점은, 피고 E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르는 피고 B의 G에 대한 채무를 직접 연대보증하였는지, 피고 E가 피고 C에게 자신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거나 표현대리가 성립 또는 유추적용되어 피고 E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다. 판단

1) 하도급계약서 중 피고 E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 가) G이 2013. 1. 25.경 피고 B에 원주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설비 공사 일체'를 공사기간 2013. 1. 25.부터 2014. 11. 30.까지, 계약금액 3,550,0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 35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준 사실, 피고 D 및 H 주식회사가 연대보증사로서 피고 B의 G에 대한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하도급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인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말미에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E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피고 E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E가 위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 옆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피고 E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을마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하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C이 피고 E 대신에 피고 E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를 제출한 원고로서는 피고 C에 의한 날인행위가 피고 E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의 날인행위가 피고 E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이 피고 E의 아버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마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가 2012. 12. 31.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2015. 8. 26.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까지 우리나라에 거주하였던 사실,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일자(2013. 1. 25.)이었고 당시 피고 E와 피고 C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사실, 피고 C이 하도급계약서에 피고 E의 인영을 날인할

당시 E의 인감증명서, 재산세납세증명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G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인감증명서나 재산세납세증명원의 발급경위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관련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고 갑 제1호증, 을마 제1,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하도급계약 당시 G의 담당자가 피고 E에 대하여 대리권 수여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하도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 E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재 주민등록번호와 일부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E로부터 피고 B의 위 하도급계약상의 G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 E가 하도급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날인하였다거나 피고 C이 그 날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날인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갑 제1호증의 기재는 피고 B가 위 하도급계약상 G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피고 E가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포괄적 위임 여부 원고는 피고 E가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피고 C에게 맡겨서 피고 C이 피고 E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피고 C이 피고 E 명의로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피고 E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을마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가 우리나라에 있지 아니하던 2012. 10. 5.경, 피고 C이 피고 E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 B의 하도급계약상의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C이 피고 E와 부자(父子)관계이고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E가 피고 C이 피고 B를 운영하면서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E 이름으로 채무부담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아버지가 자식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식이 아버지에게 자신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위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하도급계약서상으로 보면 피고 C은 피고 E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행위를 하였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표현대리의 성립 내지 유추적용 여부 원고는 피고 E가 민법 제126조 내지 제125조에 의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B가 G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상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의 주장을 보더라도 피고 E가 피고 C에게 수여한 기본대리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E가 피고 C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가 없으며(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적용 내지 유추적용 관련), ② 피고 E가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G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적용 내지 유추적용 관련). 또한 ③ 피고 C이 G에 피고 E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을마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은 물론 원고도 피고 E에 관한 인감증명서나 재산세납세증명원 등 서류 심사만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 C이 피고 E 명의를 이용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을 수 없다거나 피고 C이 피고 E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E가 피고 C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G 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G 대표자나 담당자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 E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E에게 연락하여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거나 피고 B나 피고 C에게 피고 E의 연대보증채무 부담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피고 E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 C이 피고 E의 인감도장이거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정을, 피고 E가 피고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피고 C에게 특정한 기본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G 측에는 피고 C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거나 피고 C이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 E가 위 하도급계약상 피고 B가 G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거나 유권대리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영풍

별지

1) 피고 E가 직접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